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8. 30.(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8월 30일  
전문위원 배 금 택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82
- 나. 발 의 자: 최동철 의원 외 7명
- 다. 발의일자: 2021년 8월 13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 2. 제안이유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가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세출규정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 규정 신설(안 제4조)
- 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안 부칙)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1조의2
- 나. 협조부서: 주차관리과
- 다. 입법예고(2021. 8. 17. ~ 8. 22.)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

-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서 제외시켜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 개정내용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 규정 신설(안 제4조)
  -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sup>1)</sup> 및 노외주차장<sup>2)</sup>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함
  - 이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목적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구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과 같은 직접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 <주차장법 제2조>

1)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시행시기를 2022. 1월로 함(안 부칙)

- 당해연도에 확정된 예산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27조3)) 기존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조정 함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지출함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을 위하여 우선 사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세출예산 15,268백만원 중 13.5%에 해당하는 2,056백만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임(참고)

3)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21조제1항에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본 개정안은 입법취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본예산 기준]**

□ **최근 3년간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합계	주차질서확립				행정운영경비		비고
		공영주차장 건설 (예비비포함)	Green Parking 사업	불 법 주정차 단 속	주 차 시설물 관 리	인 력 운영비	기본경비	
2021	15,267,876	476,877	397,980	1,873,091	9,003,403	<b>3,270,911</b>	245,614	
2020	18,234,869	3,873,567	398,061	2,153,097	8,267,850	3,292,672	249,622	
2019	15,718,324	950,996	396,100	2,204,036	8,853,139	3,058,997	255,056	

□ **2021년 인력운영비 내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총액	인 건 비		직 무 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비고
		보 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 수	직 급 보조비	성 과 상여금	연 금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부담금	
2021	<b>2,055,723</b>	1,518,107	73,721	49,140	86,611	265,512	62,632	

○ 인력운영비(3,270,911천원)총액의 62.8%가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임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2020. 6. 9., 2021. 1. 12.>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 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 12.>

[전문개정 2010. 3. 22.]